

2018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조사

No . 1808-04

품 목 : 알로에 액즙 (Aloe Sap)

국 가 : 베트남(Vietnam)

Contents

I. 국가 정보 및 시장통계	3
1. 수출환경 및 경제지표	5
2. 식품산업 현황	9
3. 수출입통계 및 생산통계	15
II. 시장 트렌드	19
III. 통관 및 제도	25
1. 통관 및 검역	36
2. 인증정보	41
3. 라벨링	50
4. 위생요건	55
IV. 유통채널	57
1. 유통채널 개황	58
2. 주요 유통채널 분석	63

참고문헌



I. 국가 정보 및 시장통계

1. 수출환경 및 경제지표
2. 식품산업 현황
3. 수출입통계 및 생산통계

국가 개요

인도차이나반도 중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중국, 서쪽으로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바다를 면하고 있는 사회주의 공화국임.

베트남 전쟁 후인 1975년부터 베트남 공산당이 정권을 주도하고 있으며, 1990년대의 경제 자유화와 2007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음

1986년 대외개방을 표방한 도이머이(쇄신) 정책 도입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북부지방은 여름이 긴 사계절의 아열대 기후이며, 남부지방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열대몬순기후임. 전통적인 농업국이었으나 제조업 부문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과 섬유·의류제품 수출 비중이 높음. 한편, 농업 부문에서는 쌀(세계 2위 수출국)과 커피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석유개발 성공 이후 원유도 수출품목에 포함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¹⁾ 등을 통해 경제 통합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 외교적으로 중국과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해상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관계 악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미국과는 인권문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

주요 정보

- ▶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 수도: 하노이
- ▶ 인구: 95.5백만 명
- ▶ 면적: 33.1만 km²(한반도의 1.5배)
- ▶ 공식어: 베트남어
- ▶ 주요 도시: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껀터
- ▶ GDP: 2.223억 달러 (2017년)
- ▶ 1인당 GDP: 2,385달러 (2017년)
- ▶ 경제성장률: 6.8% (2017년)
- ▶ 화폐단위: 베트남 동(VND)
- ▶ 인터넷 사용률: 53%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Vietnam July 2018」, Dun & Bradstreet, 2018.6.11.

1)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 지대로 통합하는 ASEAN+6 FTA

1. 수출환경 및 경제지표

□ 국가 위험등급 및 전망²⁾

D B 1 D B 2 D B 3 D B 4 D B 5 D B 6 D B 7 저위험 ← → 고위험	등급	등급 전망
	DB5	긍정적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Vietnam July 2018」, Dun & Bradstreet, 2018.6.11.

□ 주요 전망

구 분	세 부 내 용
긍정적	- 저렴한 인건비, 풍부한 노동력, 지리적 위치, 정치적 안정으로 외국인 투자에 매력적 - 소득 수준 향상으로 중산층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시장 확대 예상 - 베트남 공산당 체제 아래 안정적 정권 유지 전망
부정적	- 정부 재정적자로 인해 관리 필요성 증대 - 국영기업의 높은 부채비율과 비효율적 행정구조 존재 - 정부의 특별경제구역 3곳 지정 발표에 따라 수도 하노이에서 반중국 시위 발생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Vietnam July 2018」, Dun & Bradstreet, 2018.6.11

2) D&B의 국가위험등급은 전 세계 132개 국가를 대상으로 각 국가별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요소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국가별 투자 및 상거래 위험 수준을 측정한 지표임. 대/내외 안보상황, 정책의 방향성 및 지속성 등의 ‘정치적 환경’,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무역규모, 재정 및 통화정책, 재정 균형 등의 ‘경제 및 상업환경’, 제도적 투명성, 사법체계, 계약의 준수 정도, 부패지수 등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 등을 모두 반영하며, 약 9개 항목으로 구성된 국가위험지표 테이블에 따라 산출됨.

□ 주요 거시경제 지표

- 재정수지, 인프라 및 복지비용 등 정부지출 확대로 적자 기조 유지
 - 2018년에는 간접세·소득세·법인세 등 세수 확대에도 인프라 개발, 복지비용 증가, 정부 부채 이자 지급 등으로 전년대와 같은 -6.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부채상환비율³⁾은 수출 호조로 4% 미만의 비교적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 확대, 외국인투자 및 경상수지 흑자 유입 증가 등에 따라 당분간 대외지급능력 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공공부채 비율이 60.7%로 베트남 정부가 설정한 상한선인 65%에 육박하고 있어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가 제한되고 있음
- 물가상승률은 2017년 3.5%에 이어 2018년 4.0%로 지속적 상승 추세
 - 2017년에는 유가 상승에 따른 교통비 상승,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0.8%p 상승한 3.5%. 2018년에는 전년 말 전기요금 인상 효과 지속 등에 따라 4.0% 수준을 기록할 전망
- 경제성장률 6% 이상을 기록하며 당분간 높은 성장세 유지 전망
 - 제조업 부문의 수출 호조와 견고한 내수 소비 및 외국인투자 유입 증가로 6%대 경제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18년에는 전년도 기저 효과에 힘입어 7.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1.1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f	2019f	2020f	2021f	2022f
경상수지/GDP	0.5	4.1	3.1	2.3	2.2	2.4	2.6	2.6
부채상환비율	3.8	3.9	3.9	3.8	3.8	3.8	3.8	3.8
재정수지/GDP	-6.1	-6.3	-6.0	-6.0	-5.5	-5.0	-5.0	-4.5
물가상승률	0.6	2.7	3.5	4.0	4.0	4.5	4.5	4.0
경제성장률	6.7	6.2	6.8	7.2	6.5	6.0	6.0	6.0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Vietnam July 2018」, Dun & Bradstreet, 2018.6.11.

3) 부채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해당연도의 수출 대비 원금과 이자를 합친 부채를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 부채상환비율은 국가 한 국가의 부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며 부채상환비율 전망을 도출하기 위해 수출액에 대한 전망이 필요함

□ 무역통상 환경

- 동남아시아 및 중국·인도 시장 진출 교두보로서의 지정학적 입지 구축
 - 2015년 12월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출범을 기점으로 아시아의 FTA 허브로서 국제무대 내 입지 강화
 - ASEAN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로 주목받으며 차세대 ASEAN 경제성장 견인 역할 예상
- 제조업 중심의 수출 지향적 경제로 글로벌 경기에 민감
 -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아 국제 원자재 및 곡물 가격에 민감
- 많은 인구와 대도시 중심의 경제 구조
 - 인구 규모 세계 15위로, ASEAN 회원국 가운데 인도네시아(2억 6,000만 명, 세계 4위), 필리핀(약 1억 400만 명, 세계 13위) 다음으로 많은 인구
 -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인구는 2006년 약 910만 명에서 2016년 약 1,360만 명으로 증가
 - 대도시 신흥 고소득층과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고급제품 구매가 확산되고 있으며 중산층도 확대될 전망
-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6~2020년) 추진
 - 주요 목표는 2020년 1인당 GDP를 3,200~3,500 US 달러, 도시화 비율 38~40%, 직업훈련을 받는 노동자 비율 65~67%, 의료보험가입 인구 비율을 80%까지 늘리는 것
- 취약한 인프라와 부정부패, 관료주의에 따른 행정처리 비효율성
 - 국제투명성기구의 2016년 부패인식지수에서 베트남은 조사대상국 176개국 중 인도(79위), 중국(79위), 필리핀(101위)보다 낮은 113위를 기록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경영여건은 190개국 중 68위를 기록, 전년(82위) 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행정처리 절차에 상당한 절차와 시간 소요
- 중국과 대외 관계 악화 가능성
 - 중국은 베트남의 제1위 교역국이나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 등 역사적으로 중국과 잦은 분쟁을 겪었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2009년 해상 국경선 문제로 일부 해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 심화, 2014년 분쟁 지역에 관한 석유탐사 개시에 따른 관계 악화 등 반중 정서 팽배

□ 위험 및 기회 요소

구 분	세 부 내 용
위험	- GDP 대비 65%에 달하는 재정부채로 투자 불확실성 잔존 - 대도시에 구매력이 집중된 경제 구조 - 외국인 투자자에게 99년간 토지 임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규 특별경제구역 3곳 건설 계획 발표에 따라 6월 초 수도 하노이에서 반중국 시위 확산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대중 관계 악화 가능성 잠재 - 낮은 국영기업 운영 효율성 및 은행 시스템 비선진화
기회	- 수출 지향적 산업구조와 제조업 부문의 호조, 민간소비 증가와 FDI 유입에 따라 경제성장률 6% 이상 높은 수준 유지 - 저렴한 노동력으로 외국인투자 활발 - 경공업 위주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탈바꿈 중 - 동남아에서 가장 큰 원유 생산국 -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높으며 경제활동인구 증가세 - 구매력이 큰 25~54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46%를 차지

자료: 「Country Insight Snapshot Vietnam July 2018」, Dun & Bradstreet, 2018.6.11.

2. 식품산업 현황

1) 가공식품 산업 동향

□ 가공식품 산업

- 2017년 베트남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1% 성장한 243조 동⁴⁾(약 11조 8,584억 원)을 기록
 - 바쁜 현대인의 일상과 서구식 식습관(아침용 시리얼, 파스타 소스, 샐러드드레싱 등) 등이 가공식품 산업 성장 견인
 - 수입 관세 하락과 해외 기업의 베트남 진출로 다국적 기업인 Friesland Campina Vietnam Co(사), Acecook Vietnam(사), Nestlé(사)가 가공식품 분야에서 선전

표1.2 가공식품 시장 규모(2015-2020)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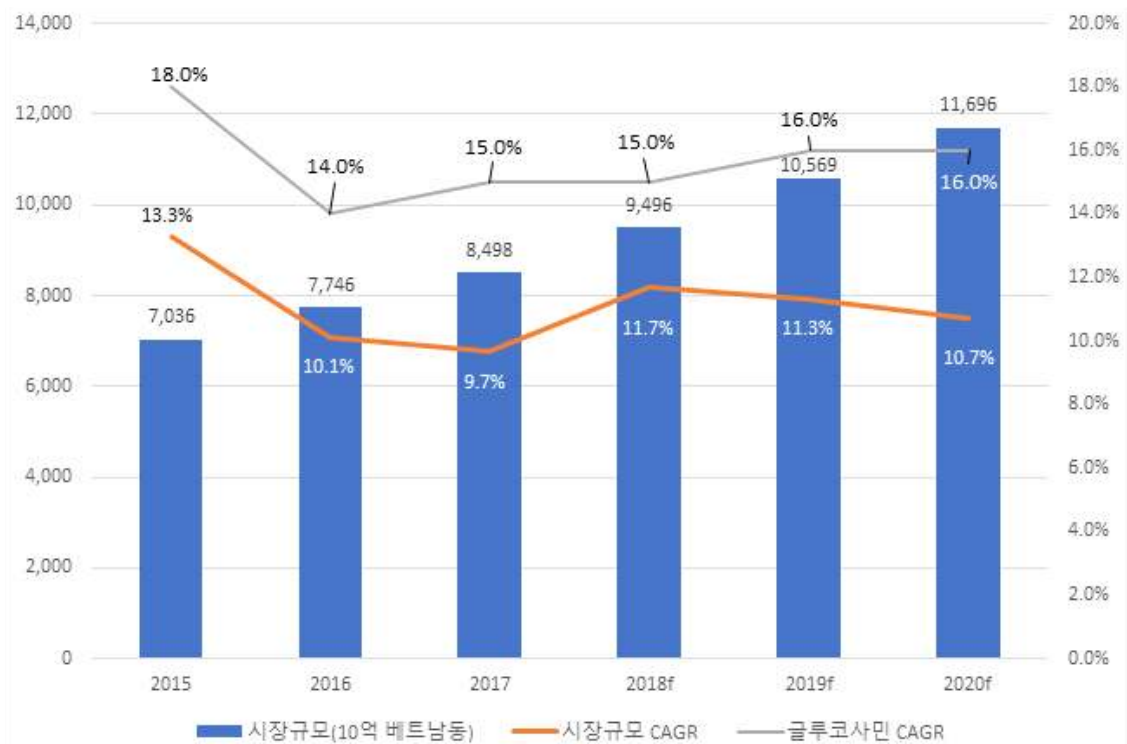
4) 100베트남동(VND)=4.88원(KRW)(KEB 하나은행 고시 기준, 2018.10.30.)

2) 건강기능식품 산업 동향

□ 건강기능식품 산업 동향

- 2017년 베트남 컨슈머 헬스(Consumer Health) 시장 규모는 약 20조 6000억 동(약 1조 52억 원)으로, 이 중 건강기능식품(Dietary Supplement)은 전년 대비 약 9.7% 성장하여 8조 5천억 동(약 4,148억 원)을 기록. 건강기능식품의 최근 5개년(2013-2017년) 연평균 성장률(CAGR)은 불변가격 기준 12.9%로, 시장 규모는 2022년까지 약 12조 동(5,856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
- 빠른 경제발전 속도와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로, 중상위 소득층의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소비 증가
- 건강기능식품 중 글루코사민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암웨이 베트남이 약 11%의 점유율로 건강보조식품 시장 내 선두

표1.3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와 글루코사민 CAGR (2015-2020)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 시장특성 및 주요 동향

- 중산층 소비자층의 증가와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 변화
 - 월소득 714달러 이상의 일명 “부유한 중산층” 으로 불리는 소비자층의 급격한 증가
 - 20~49세까지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며, 중산층 인구는 지속적 증가 추세로 2020년까지 전체 인구의 약 40%인 총 4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 대도시에서 뉴스와 미디어 접근성이 높은 고학력·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강화식품 및 보조 제품을 필수품으로 인식
 - 베트남 진출시, 소득 수준과 신제품에 대한 개방적인 마인드가 높은 호치민을 통해 마켓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 수입 건강보조식품 강세
 - 베트남 보건부(MOA)는 2016년 기준 베트남 내 건강식품 생산 및 수입 업체가 4,000개를 웃돌며 2만 종류 이상의 제품들이 현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
 - 4,000개의 건강기능식품 취급 업체 중 837곳은 현지 업체로 분류되며 현지 투자법의 제약을 벗어나 사업 활동 영위
 - 미국, 유럽, 일본산 건강보조식품의 인기가 높으며, 현지 소비자들은 저품질 모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선진국 브랜드를 선호
- Amway, Herbalife 등의 글로벌 기업이 베트남 건강보조식품 시장을 선점한 상황으로, 수입제품과 자국산 제품은 각각 프리미엄 시장과 일반 대중 시장(Mass Market)을 타겟으로 함
- 젊은 소비자들은 주로 Hand Carry⁵⁾, 직구, SNS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반면 노년층 또는 장년층은 약국이나 건강기능식품 세미나 등을 통해서 구입함

5) 소규모의 자영업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오거나 항공사 승무원을 통해 구입/위탁하는 방식. 정식 수입 제품이 아니기에 라벨링도 없지만 가격이 좀더 싼.

표 1.4 베트남 건강기능 식품 TOP10 기업 시장점유율 추이 (2012-2017)

(단위: %)

업체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Amway Vietnam Ltd	15.7	16.1	16.1	8.5	5.4	5.2
Tiens Vietnam Co Ltd	4.9	4.8	4.5	4.4	4.2	4.0
Haugiang Pharmaceutical JSC	3.5	5.2	3.5	2.9	4.4	3.9
Herbalife Vietnam Ltd	0.9	1.1	1.5	2.2	2.9	3.5
ICA Biotechnological - Pharmaceutical JSC	2.6	2.7	2.6	2.7	2.7	2.7
International Medical Consulting Co Ltd (IMC)	2.7	2.5	2.4	2.3	2.3	2.4
Traphaco JSC	2.3	2.1	1.9	1.9	2.1	2.3
Sanofi-Aventis Vietnam Co Ltd	1.0	0.9	0.9	1.0	1.0	1.0
Korea Ginseng Corp	0.5	0.5	0.6	0.6	0.7	0.7
Union Pharma	0.8	0.7	0.7	0.7	0.7	0.7
기타	60.6	59.4	61.7	69.6	70.2	69.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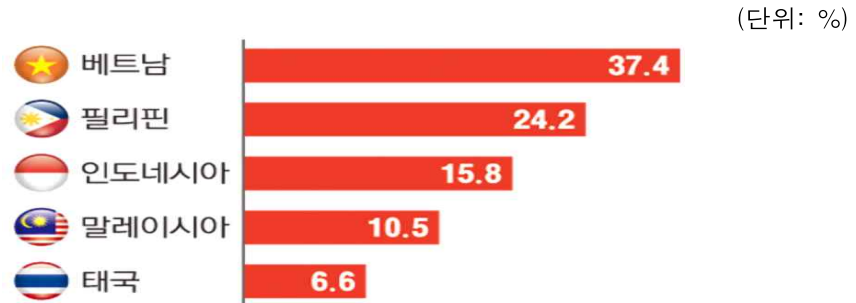
o 식품 안전 및 위생은 베트남 소비자의 주요 구매결정 요인

- 세계 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14년 5000여 명 식중독 증세, 40여 명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짐
- 전반적으로 낮은 브랜드 인지도로 인해 제품 원산지와 관련된 품질 표시는 구매자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준이 됨

o 현대적 소매 판매 채널 확대

- 2016년 기준 대형마트 약 800개, 쇼핑센터 약 150개, 편의점 및 미니마트 약 2,000개의 현대적 소매유통 채널 존재하며, 미니마트와 편의점의 급성장이 베트남 소비패턴의 변화를 주도
- 로컬 기업 빈그룹(Vingroup)은 2018년 말까지 Vinmart+ 점포 1,000개, 2019년까지 1만여 개의 Vinmart 및 Vinmart+ 점포 추가 개설 계획
- 7-Eleven 은 2017년 6월 호치민에 1호점 개점 이후 10년 이내 1,000개 매장을 베트남 전역에 개점할 계획

표 1.5 2017-2021년 동남아 편의점 시장 연평균 성장률 전망



자료: IGD 리서치

- o 한국 유통업체 진출 및 유통업체간 경쟁 심화
 -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유통기업은 롯데마트, 이마트 등이며, 대형 유통마트에서 소매유통시장으로 채널 다변화
 - 베트남 최대 온라인 쇼핑몰 라자다(Lazada) 외 추가로 온라인 쇼핑몰(Tiki, Lotte)에 한국상품관 추가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 입점 확대 및 장기적인 수출 확대 지원
 - 외국계 및 로컬 편의점·미니마트 진출 확대로 국내 유통기업과 경쟁 본격화

수출입통계 개요

❖ 알로에 액즙 관련 주요 수치

- 글로벌 HS CODE 1302.19품목의 수입 규모 약 26억 달러(2017년)
- 베트남 HS CODE 1302.19.90품목의 수입 규모 약 1천6백만 달러, 세계 30위(2017년)
- 베트남 HS CODE 1302.19.90품목의 수입 1위는 중국으로 시장점유율 33.3% 차지(2017년)
- 한국 HS CODE 1302.19.9010품목의 수출 규모는 약 1,095톤, 2천4백만 달러(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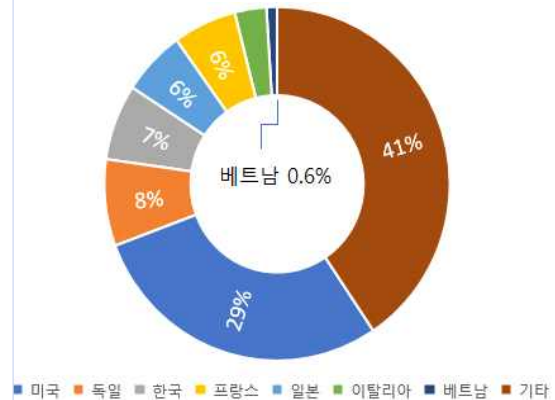
❖ 알로에 액즙 국가별 HS CODE 분류

국가	HS CODE	품명
한국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
베트남	1302.19.90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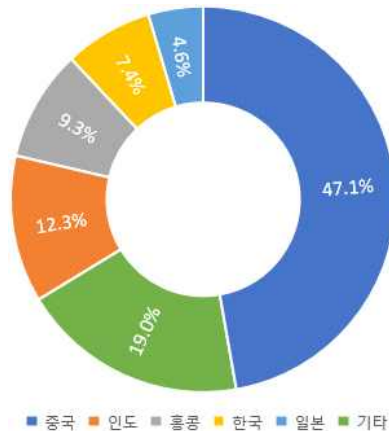
❖ 글로벌 HS CODE 1302.19 수입 규모(2017)

수입국		2017 금액(천 달러)
글로벌		2,665,561
1	미국	770,709
2	독일	225,722
3	한국	176,295
4	프랑스	151,522
30	베트남	16,068

❖ 글로벌 HS CODE 1302.19 수입 비중(2017)



HS CODE 1302.19 베트남 수입국별 점유율(2016년)



3. 수출입통계

1) 통계분석 기준 설정

□ 베트남 알로에 액즙 통계 기준 설정

- 알로에 액즙 글로벌 및 베트남 수입통계, 알로에 액즙의 한국산 수출 통계를 확인하기 위해 HS CODE를 통계 기준으로 설정⁶⁾

□ 알로에 액즙 HS CODE⁷⁾는 한국 1302.19.9010, 베트남 1302.19.90으로 설정

- 글로벌 수입 규모 파악을 위해 HS CODE 1302.19, 베트남 수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HS CODE 1302.19, 한국산 알로에 액즙 수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HS CODE 1302.19.9010 을 통계 기준으로 설정

표 1.6 조제 식료품 항목별 통계 기준 설정

조사 항목	통계 기준			
글로벌 수입 통계	HS CODE	1302.19	품명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감초, 홈 및 아편 제외)
베트남 수입 통계		1302.19.90		기타
한국산 수출 통계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

표 1.7 조제 식료품 국가별 HS CODE 분류

국가	HS CODE	품명
한국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19	기타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
베트남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19	기타
	1302.19.90	기타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 세계 HS 정보시스템(www.customs.go.kr)

표 1.8 HS CODE 검색 사이트

구분	사이트명	URL
HS CODE	관세법령정보포털 3.0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세계 HS 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getBuRyulList.po
	베트남 관세청	https://www.customs.gov.vn

6) 의외 제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한 '2018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을 조회하거나,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3.0'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7) HS CODE는 6자리는 전세계 공통, 7-10번째 숫자는 각 나라마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10자리, 베트남은 8자리를 사용하고 있음

2) 글로벌 수입 통계 (통계기준: HS CODE 1302.19)

□ 2017년 글로벌 수입 규모 1위는 미국(28.9%)이며, 베트남은 30위(0.6%)

- 2017년 HS CODE 1302.19품목의 글로벌 수입 규모는 약 26.6억 달러로 2013-2017년 5.8%의 연평균 성장률 기록
 - HS CODE 1302.19품목의 최대 수입국은 미국으로 2017년 기준 약 7.7억 달러 (28.9%)를 수입하였으며 2013-2017년 연평균 7.6% 증가
- 2017년 베트남의 HS CODE 1302.19 수입 규모는 1천6백만 달러(30위)를 기록하였으며, 2013-2017년 연평균으로는 30.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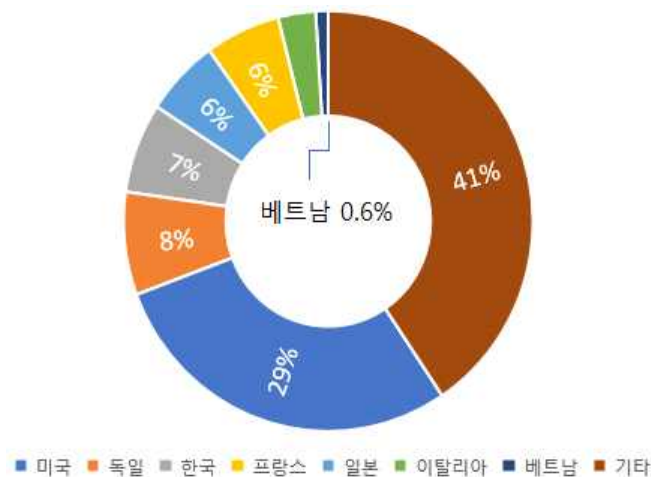
표 1.9 글로벌 HS CODE 1302.19 수입 규모 추이(2013-2017)

(단위: 천 US 달러)

수입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성장률
글로벌	2,127,470	2,224,410	2,233,034	2,368,068	2,665,561	5.8%
1 미국	575,394	586,485	661,717	707,518	763,479	7.6%
2 독일	159,397	171,859	181,359	185,562	225,611	9.1%
3 한국	126,463	123,799	117,318	140,940	176,295	8.7%
4 프랑스	128,098	131,464	111,074	129,237	151,406	4.3%
5 일본	169,168	146,758	132,441	128,799	147,656	-3.3%
6 이탈리아	68,260	74,834	71,581	73,494	88,418	6.7%
30 베트남	5,613	8,661	10,427	11,255	16,064	30.1%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표 1.10 HS CODE 1302.19 국가별 수입 비중(2017년)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3) 베트남 수입 통계 [통계기준: HS CODE 1302.19]

- 2016년⁸⁾ 베트남 내 HS CODE 1302.19품목 수입 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 (47.1%)
 - 2016년 베트남 HS CODE 1302.19품목의 글로벌 수입액은 약 1100만 달러로, 이는 2012년 약 570만 달러에서 약 49% 증가한 수치
 - 2016년 베트남의 HS CODE 1302.19품목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약 47.1%의 시장 점유율 차지
 - 2016년 베트남 HS CODE 1302.19품목의 4위 수입국은 한국이며 베트남 내 시장 점유율은 약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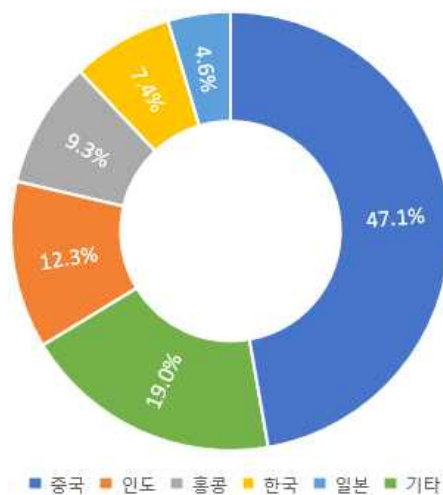
표 1.11 HS CODE 1302.19.90 베트남 수입 규모 추이(2012-2016)

(단위: 천 US 달러)

수입국가	2012	2013	2014	2015	2016	점유율
글로벌	5,755	5,613	8,661	10,427	11,255	100.0%
1 중국	2,666	2,904	4,537	5,774	5,299	47.1%
2 인도	657	378	536	630	1,389	12.3%
3 홍콩	0	344	505	369	1,043	9.3%
4 한국	570	231	348	522	834	7.4%
5 일본	241	185	310	143	519	4.6%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표 1.12 HS CODE 1302.19 베트남 수입국별 점유율(2016년)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8) 2018년 9월 기준으로 2017년 베트남 HS CODE 1302.19 품목의 국가별 수입 통계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음.

4) 한국 수출 통계 [통계기준: HS CODE 1302.19.9010]

- 2017년 한국 HS CODE 1302.19.9010품목의 글로벌 수출량은 약 10톤, 수출액은 약 7만8천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각각 25.2%, 69.2% 감소
 - 2013-2017년 한국의 HS CODE 1302.19.9010품목 수출액 연평균증감률은 약 80%를 기록함. 하지만 이는 2014년의 전년 대비 430%대 큰 성장에 기인한 수치이며 최근 수출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1.13 한국 對글로벌 HS CODE 1302.19.9010 수출 통계

(단위: kg, US 달러)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중량 (연 증감률)	998 (△31.5%)	6,801 (581.5%)	14,514 (113.4%)	13,966 (△3.8%)	10,450 (△25.2%)
금액 (연 증감률)	86,827 (△77.3%)	464,746 (435.3%)	162,218 (△65.1%)	255,392 (57.4%)	78,653 (△69.2%)

자료: KATI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한국 HS CODE 1302.19.9010품목의 베트남 수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
 - 연간 수출규모가 1톤, 1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

표 1.14 한국 對베트남 HS CODE 1302.19.9010 수출 통계

(단위: kg, US 달러)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중량 (연 증감률)	625 (66.7%)	675 (8.0%)	325 (△51.9%)	325 (0.0%)	10 (△96.9%)
금액 (연 증감률)	43,415 (66.3%)	47,338 (9.0%)	21,825 (△53.9%)	23,262 (6.6%)	2,953 (△87.3%)

자료: KATI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II. 시장 트렌드

□ 산업무역부, 대외무역관리법에 대한 시행규칙 발효

- 2018년 5월 15일, 정부는 대외무역관리법에 관한 일부 세부규정을 명시한 시행령 제 69/2018/ND-CP 제정 및 시행
 - 제69/2018/ND-CP 법령 원문의 물품리스트 부록V에 의뢰 품목인 알로에 액즙이 속할 수 있는 농산물 항목이 기재되어 있음
- 2018년 6월 15일, 산업무역부 장관은 대외무역 관리 시행령 제69/2018/ND-CP를 기반으로 해당 법령 일부 규정을 상세히 명시한 제12/2018/TT-BCT를 제정 및 시행. 해당 시행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 내용이 포함
 - 산업무역부 관리 하에 일부 소비재, 의료기기 또는 중고차 수입 금지 품목 번호(HS코드) 목록 규정
 - 일시 수입, 재수출, 전입 활동에 대해 임시로 활동을 금지하는 품목 번호(HS 코드) 목록 규정

□ 체인형 드럭스토어 확대에 해당 채널 진출 고려 필요⁹⁾

- 전통적인 약국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들 중 진품이 아닌 사례가 발견되는 등 제품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최근 소비자들의 구매처가 전통적인 약국에서 체인형태의 드럭스토어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임

□ 불량 건강기능식품 단속 강화로 수출 시 통관에 주의¹⁰⁾

-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2017년 1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및 의약품의 단속 사례를 발표하였음. 해당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수입 유통 및 제조과정에서 총 244건을 적발하였고, 이중 45.9톤가량이 미등록 제품이었으며 1톤 가량은 원산지가 불분명하여 폐기처분되었음. 관계 당국은 해당 사례에 대해 미화 94만 3,000달러(약 10억 6,9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 보건 당국은 이러한 사례들을 계기로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제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원산지가 불분명한 제품 또는 불량 건강기능제품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수립하겠다고 밝힘

9) Ken Research www.kenresearch.com

10)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수출가이드

□ SNS를 통한 해외 제품 구매 증가¹¹⁾

- 최근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매/판매 방식이 베트남에도 유행하고 있음. SNS 라이브 방송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제품을 확인하고 구입하며, 젊은 소비층들이 애용하고 있음
- 일반 소규모 자영업자가 5년짜리 한국 복수 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의 면세품이나 일반 상품을 베트남으로 판매 하는 방식도 유행

□ 베트남 內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 증가 전망¹²⁾

- 글로벌 정보분석 기업인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BMI)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베트남 內 건강관리 비용은 약 16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베트남 GDP기준 7.5%로 추산됨. 나아가 2021년까지 약 12.5%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약 26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늘어가는 추세임

11) 베트남 현지조사원 조사

12)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BMI)

❖ [현지 유통채널 담당자 인터뷰]

유통 담당자
1) 유통 담당자 컨택 방법 제품에 따라 여러 가지 경로가 있고 그 방법도 다양함. 예를 들면 현지인 명의로 베트남 유통업체를 만들고 한국 공급자와 직접 연락해서 수입하고 판매함. 유통채널도 총판, 백화점, 약국 로드샵 등 다양함. 2) 한국산 제품 소비의 트렌드 수삼, 홍삼에서 시작하여 우황참심환 등 제품군이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임 3) 한국산 제품 , 아시아 제품 강점 한국제품은 중국산 등 여타 아시아 제품에 비해 신뢰도가 높음 4) 인기 있는 한국산 건강 기능 식품 홍삼, 청심환, 동충하초, 영지버섯이 있고, 식품은 김과 김치가 인기 있음 5) 한국산 건강기능 식품의 판매 규모 2015년 발표 베트남 건강식품 시장 38억 달러(4조 원)이었고, 매년 12% 성장세 2018년 6조 원대로 추정. 이중 수입산이 80% 전체 수입 건강식품 중에 미국과 한국이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 2017년 한국 홍삼 제품은 약 천억 원대로 추정 6) 한국산 건강 기능 식품의 주요 구매층 40-60대 여성

※ 참고사항: 베트남에는 의뢰 품목 “알로에 액즙” 이 전무 하여 상위 개념인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으로 범위를 잡아 인터뷰를 진행함

❖ [현지 소비자 인터뷰]

소비자 1 (Nguyen, 여성, 80)

1) 건강기능 식품 구매 시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2) 한국산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음. 특히 인삼과 홍삼 상품이 대표적이라는 생각”

3) 한국산 건강기능 식품을 먹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있음”

4) 한국산 건강기능 식품의 위생이나 효능 신뢰의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브랜드에 따라 신뢰도가 다름”

5) 선호하는 수입 건강기능 식품이 있다면 어느 나라의 어떤 제품입니까?

“미국 Schiff의 Move free Advanced, 미국 Natural made의 비타민E 400 IU, 한국의 홍삼정과 홍삼 젤리. 평상시에 약국에서 사거나 자녀들이 Hand carry로 사 줌. ”

소비자 2 (Tuan, 남성 , 56)

1) 건강기능 식품 구매 시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효능과 원산지”

2) 한국산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음”

3) 한국산 건강기능 식품을 먹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먹어본 적 있으며 계속 구매할 의향 있음”

4) 한국산 건강기능 식품의 위생이나 효능 신뢰의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일반적으로 베트남 상품보다 좋을 것 같음”

5) 선호하는 수입 건강기능 식품이 있다면 어느 나라의 어떤 제품입니까?

“미국의 글루코사민, 한국의 홍삼과 녹용. 보통 약국에서 구입하거나 SNS를 통해 Hand Carry 상품을 구입함 ”

소비자 3 (Pham, 남성, 29)

1) 건강기능 식품 구매 시 주요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효능과 가격”

2) 한국산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 좋음 ”

3) 한국산 건강기능 식품을 먹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속해서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홍삼 농축액, 홍삼 절편, 콜라겐, 알로에 액즙 등을 먹어봤으며 앞으로도 구매할 의사가 있음”

4) 한국산 건강기능 식품의 위생이나 효능 신뢰의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세미나를 통해 파는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위생이 별로라고 들음”

5) 선호하는 수입 건강기능 식품이 있다면 어느 나라의 어떤 제품입니까?

“미국의 종합 비타민. 미국의 지인이 대형 마트에서 구입 후 보내줌”

※ 참고사항: 베트남에는 의뢰 품목 “알로에 액즙” 이 전무 하여 상위 개념인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으로 범위를 잡아 인터뷰를 진행함



Ⅲ. 통관 및 제도

1. 통관 및 검역
2. 인증정보
3. 라벨링
4. 위생요건

1. 통관 및 검역

통관 및 검역 개요

❖ 베트남 가공식품 수입통관 절차

베트남에서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이 이루어짐

번호	절차	주요 내용	관할 기관
1	수입 신고 준비	- 식품안전규정에 관한 적합성 선언(AC) 등록 - 식품안전규정 및 식품첨가물 규제 확인	베트남 보건부 소속 식품관리청
2	수입 신고	- 수입 신고 - 필요서류 제출	베트남 산업무역부 관할 세관
3	물품검역 검사	- 검역 혹은 검사 절차	보건부 혹은 공공 의료위생원
4	관세 납부	- 관세 등 납부 - 품목에 따라 특별소비세 부과	관할 세관
5	물품 반출	- 수출관세, 수입 관세,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 관세는 관세청, 부가가치세는 세무국에 신청	관세청 세무국

자료: 베트남 관세청(www.customs.gov.vn)

❖ 가공식품 통관 절차



관세 및 세금 개요

❖ 베트남 HS CODE 1302.19.90 (2018년 기준) - 액즙의 경우

HS CODE 품명	구 분	관세율	원산지 기준(PSR)
1302.19.90 기타 식물성수액 과 추출물	최혜국 (Most favored nation, MFN)	5%	-
	한-ASEAN 무역협정 (AKFTA)	0%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한-베트남 무역협정 (VKFTA)	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 베트남 부가가치세 정보

부가세(Value Added Tax) 10% 부과

❖ 베트남 관세율 확인 방법

- 1) '관세법령정보포털 3.0 > 세계 HS > 관세율표에서 베트남을 선택한 후 확인하고자 하는 품목의 HS Code를 입력하면, 해당 품목의 관세율 확인 가능
- 2) '통합무역정보서비스(www.tradenavi.or.kr) > FTA/관세 > 통합관세비교(한국 FTA 기준)'에서 FTA 협정 정보, 관세율, 원산지 기준 확인 가능
- 3) 해당 HS CODE에 대한 관세율을 베트남 관세청에서 직접 확인하려면 베트남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www.customs.gov.vn) 조회 가능

분류	기관 사이트명	URL
관세율	관세법령정보포털 3.0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통합무역정보서비스	www.tradenavi.or.kr
	베트남 관세청	www.customs.gov.vn

1) 통관 절차

- 베트남 통관 절차는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수입 신고와 심사에서 시작돼, 물품 검사, 관세 등의 납부를 거쳐 물품을 반입하는 것으로 수속이 종결됨



Step 1 수입신고 준비

수입 신고 준비	개요	가공식품 수출 시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의 식품관리청에 식품안전규정에 관한 적합성 선언(Announcement of Conformity, AC)에 등록해야 함
	AC 등록 ¹³⁾	AC 등록 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 ISO22000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서와 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 필요 따라서 알로에 액즙의 경우 AC 등록을 위해 다음의 서류 필요 ① HACCP, ISO22000 혹은 이와 동등한 성격의 인증서 ② 성적서(Certificate of Analysis)
	식품안전규정	① 식품안전에 관한 일반 조건 • 병원성 미생물, 식물 살충제 잔류물, 수의학 약물 잔류물, 중금속, 오염 물질 및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의 경우 관련 규정을 충족해야 함 •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음 조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식품첨가물 사용 규칙 - 식품 포장 및 라벨에 관한 규정 - 식품 보존에 관한 규정 ② 신선식품에 관한 안전 조건 • 동물성 신선식품의 경우 관련 증명서를 받아야 함 ③ 가공식품에 관한 안전 조건 •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고유의 특성을 유지할 의도로 만든 식품 재료는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제품을 만들어서는 안 됨 • 시장에 유통되기 전 관할 국가 기관에 가공식품 팩을 등록해야 함 ④ 식품첨가제 및 식품 가공 첨가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 • 식품첨가제 및 식품 가공 첨가제의 해당 기술 규정을 충족해야 함 • 제품 라벨에 사용되는 경고문이나 첨부되는 문서는 제품의

		원산지에 따라 영어나 다른 언어를 허용함 • 목록에 있는 식품첨가제 및 식품 가공 첨가제는 보건부에 의해 식품 제조 사용의 허가를 획득해야 함 • 유통 전 관할 기관에 등록 해야 함
	식품첨가물 규제	식품첨가물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식품안전법 제17조)¹⁴⁾ ①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고 법률 규정에 따를 것 ② 식품 라벨 또는 첨부 자료에 베트남어 또는 제조지역의 언어로 적정사용 방법을 명기하고 있을 것 ③ 식품 제조, 운영에 관한 보건부 장관의 사용인가를 받은 식품첨가물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을 것 ④ 유통에 앞서 규제에 따르고 있다는 취지의 등록을 당국에 할 것 - 상기 조건 중 ③의 보건부 장관의 사용인가를 받은 식품첨가물 리스트는 “식품첨가물의 관리에 관한 보건부 통지(No. 27/2012/TT-BYT)” 부록 I 에서 정하고 있음 - 부록 II에는 첨가물에 대한 최대 사용허용량(ML수치) 이 기재되어 있음 - 동 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의 사용, 판매, 수출입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성분의 취급에 대해서는 보건부의 허가가 필요함



Step 2 수입 신고

수입 신고	개요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로 나뉨 물품을 하역하는 항만의 세관에서 통관 진행 베트남에는 통관을 대행해주는 관세사가 존재하나 거의 활성화되어있지 않고, 주로 물류 업체를 통해 통관하거나 업체 전담 직원을 통해 진행
	필요서류	① 수입허가증 ② 원산지 증명서(FTA 세율 적용을 위한 필수 서류) ③ 수출계약서 ④ 세관신고서 ⑤ 연간 쿼터증명서(쿼터 제품의 경우 해당. ⑥ 선하 증권(Bill of Lading)

13)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ertification, USDA 2017.12.28

14) 식품위생과 안전에 관한 법령 No.55/2010/QH12, 식품첨가물 관리에 관한 보건부 통지 No.27/2012/TT-BYT

		⑦ 화물보관 해제주문서(Cargo release Order) ⑧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⑨ 포장명세서(Packing List) ⑩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그리고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출
	자동수입 허가 (Automatic Import Permit)	수입 전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 허가 신청하여야 하며, 산업무역부는 5일 이내에 허가를 발행함 필요서류로는 수입신고서, 수입 계약서, 상업 송장, 포장명세서, 수입 허가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음 ¹⁵⁾
	유의사항	수입신고서(전자, 서면신고 공통)는 신고일로부터 15 일만 효력이 유 지되며, 국경 관문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신고해야 함

15) 제87/2012/ND-CP, 제196/2012/TT-BTC, 제5559/TCHQ-CNTT 법령을 근거로 함

Step 3 물품검역/검사

물품 검사	개요	식품관리청의 식품안전, 위생 및 품질 관리국 소관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 심사. 물품 검사는 보통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도어투도어(Door to Door)로 운반되는 품목의 경우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 필수 검사/규격/인증을 받아 수입·판매되는 경우는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는 검사소에서 샘플을 검사한 후 적격 여부 판정 수입 신고 후 세관검사에서는 물품 위험도에 따라 Green Channel (저위험), Yellow Channel(중간위험), Red Channel(고위험) 등 3가지로 분류 <table><tr><th colspan="2">분류</th><th>심사 절차</th></tr><tr><td colspan="2">Green Channel (저위험 물품)</td><td>세관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 면제</td></tr><tr><td rowspan="2">Yellow Channel (중위험 물품)</td><td>E-Yellow Channel</td><td>E-Document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td></tr><tr><td>Paper-Yellow channel</td><td>종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td></tr><tr><td colspan="2">Red Channel (고위험 물품)</td><td>종이 서류 제출 및 수입 물품 실제 검사</td></tr></table>	분류		심사 절차	Green Channel (저위험 물품)		세관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 면제	Yellow Channel (중위험 물품)	E-Yellow Channel	E-Document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Paper-Yellow channel	종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Red Channel (고위험 물품)		종이 서류 제출 및 수입 물품 실제 검사
	분류		심사 절차													
Green Channel (저위험 물품)		세관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 면제														
Yellow Channel (중위험 물품)	E-Yellow Channel	E-Document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Paper-Yellow channel	종이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함														
Red Channel (고위험 물품)		종이 서류 제출 및 수입 물품 실제 검사														
	유의사항	관세법 30조에 따르면 농산물, 수산물 등 특정 품목 또는 장기간 통관 기록이 우수한 수출가공지역의 경우 검사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일반 통관의 경우 10% 샘플 검사를 함. 통관/관세법 절차 위반 전력이 있는 수입자의 경우 전수 조사를 실시함														



Step 4 관세 납부

관세 납부

베트남 HS CODE 1902.19.20 관세 현황

종류	그룹	관세	시행날짜 (from)
MFN	기본관세율	5%	2018-01-01
ATIGA	ASEAN 상품협상무역	0%	2018-01-01
ACFTA	ASEAN-중국	0%	2018-01-01
AKFTA	ASEAN-한국	0%	2018-01-01
VKFTA	베트남-한국	0%	2018-01-01

한국산 알로에 액즙 기본세율 5% 또는 협정세율 0% 납부

해당 HS CODE 1902.19.20에 부과되는 기본세율은 5%지만,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판정된 물품은 한·베트남¹⁶⁾, 한·ASEAN¹⁷⁾ 관세율이 동일하게 0%로 적용됨

	<베트남 FTA 특이사항> 베트남은 한-ASEAN FTA(AKFTA)와 한-베트남(VKFTA) 두 가지로 체결되어있어 물품에 따라 선택적인 관세 적용 가능 이때 특정 품목은 한가지 FTA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품목에 따라 두 가지 FTA에 양허하는 내용이 상이하므로, 양허대상품목 및 세율을 확인한 후 유리한 세율을 적용 만일 두 가지 FTA에 대해 세율이 동일하다면, 한-베트남(VKFTA)는 사후적용 기간이 1년, 한-ASEAN FTA(AKFTA)는 30일임. 따라서 한-베트남 FTA가 더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



Step 5 물품 반출

물품 반출	개요	수입업자 창고 입하
	유의사항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관세 및 내국세 지불한 뒤 수입 물품 통관 완료 후 최종적으로 화물 반출 가능

2) 검역(식품 수입검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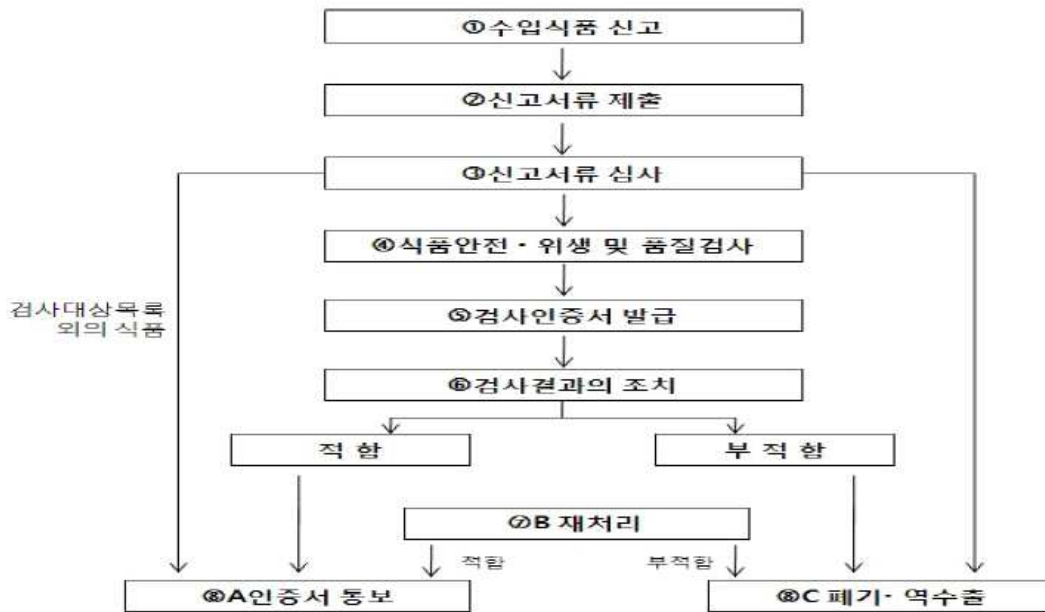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수입통관 시 베트남 식품관리청의 식품안전, 위생 및 품질 관리국에서 실시하는 식품의 안전, 위생 및 품질에 관해 검사를 받아야 함.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베트남 식품관리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베트남 식품관리청의 직원으로부터 심사 및 검사를 받은 후 통관이 완료됨. 이때 베트남과 MR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은 검사단계가 생략될 수 있음

<제출서류>
- 검역검사등록서 - 검사제품이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 통관 절차에 필요한 서류 - 품질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한 검사보고서 - 기타 검사의 간략화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16) 한-베트남 FTA: 2012년 협상개시 이후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5년 12월 20일 발효. 한-베트남 FTA는 기존의 한-ASEAN FTA보다 상품 자유화와 무역 촉진을 업그레이드한 FTA 형태
- 17) 한-ASEAN FTA는 2007년 6월 1일에 발효. 한국산 수입 물품에 대해 ASEAN 각 회원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양허 유형에 따라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거나 인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철폐

< 베트남 식품관리청의 수입식품검사 절차 >



3) 베트남 가공식품 수입 유의사항

□ 검역 절차

○ 개요

- 시행령 No.38/2012/ND-CP 제1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식자재, 식품첨가물, 식품가공보조제, 식품포장용구, 식품포장재, 식품용기는 검사의 대상. 단, 개인이 휴대하는 관세 면제 범위 내의 자가소비용 식품, 외교관·영사관의 수하물에 포함된 식품,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전시회 참가 등),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식품, 시험용·연구용 식품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

○ 검역 및 검사 대상 품목

- 베트남 보건부가 공포한 「위생 및 안전성 감사가 의무화된 HS CODE별 수입식품에 관한 결정 No.818/QĐ-BYR」은 다음 13개 품목을 수입 검역이나 검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정하고 상세한 것은 별표에 HS CODE별¹⁸⁾로 정하고 있음
- 알로에 액즙의 경우 베트남 수입 시 검역 대상에 속하며, 상공부 식품안전검사 대상에도 포함

18) HS CODE별 검역 및 검사 품목은

<https://vanbanphapluat.co/decision-no-818-qd-byt-on-promulgating-the-list-of-imported-goods-required>에서 확인 가능

표 3.1 시행령 No.818/QD-BYT가 지정한 검역·검사대상 13개 품목

- ① 고기/어류의 조제품
- ② 동물성/식물성 유지(油脂)
- ③ 우유 및 각종 유제품
- ④ 설탕 및 각종 설탕과자
- ⑤ 카카오, 카카오 성분을 포함한 각종 조제품
- ⑥ 곡물/곡분/전분/우유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 ⑦ 커피, 차, 후추
- ⑧ **야채/과일로 만든 조제품**
- ⑨ 조미료
- ⑩ 음료, 알콜음료, 식초
- ⑪ 식품포장재
- ⑫ 기능성 식품, 건강보호식품
- ⑬ 식품첨가물

- 따라서 수출자는 사전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수출검역증명서를 준비해야 함

o 검역 및 검사 시 필요서류 및 절차

- 상기 품목 수입에 대해 상품 도착 5일 전까지 검역 등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령 No.23/2007/QD-BYT에 의해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음

표 3.2 시행령 No.23/2007/QD-BYT에 따른 검역 및 검사 서류와 절차

- <필요서류>
- 검역검사등록서
 - 검사제품이 해당하는 품질기준 사본
 - 통관절차에 필요한 서류
 - 품질기준이 공표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지정된 검사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한 검사보고서
 - 기타 검사의 간략화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 <신청수순>
- 검사기관(보건부 또는 공공의료위생원)에 서류 제출(상품 도착 5일 전까지)
 - 검사기관은 서류 심사 후 검사예정방법을 확인하고 검사일정을 통지
 - 검사 실시(종류, 규격, 포장, 라벨, 수량, 상태 등)
 - 샘플 분석 기초기준과 베트남 기준(TCVN)을 비교 후 결과 통지
 - ※ 베트남 국가기준(TCVN)은 식품별로 상세히 설정되어 있으며 베트남 품질측량국에서 구입할 수 있음(유료 판매)

o 상공부 식품안전검사 신청 절차

- 알콜, 맥주, 청량음료수, 유제품, 식물성기름, 밀가루제품, 전분제품, 과자·빵·잼 및 이 제품들의 포장재를 포함한 수입제품·화물에 대해서는 상공부가 소관하는 수입제품의 식품안전검사에 관한 상공부 통지 No.28/2013/TT-BCT의 적용을 받게 됨. 이들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식품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함

표 3.3 상공부 통지 No.28/2013/TT-BCT에 따른 식품안전검사 필요 서류와 절차

<필요서류>

- 수입식품 검사신청서
- 보건부 또는 보건부 위탁기관이 발행한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적합의 수리서(受理書) 또는 규정적합 인정서의 공증 첨부 사본
- 화물수입계약서 및 포장명세서의 공증첨부 사본
- 수입자에 의한 증명이 첨부된 선하증권(B/L) 및 인보이스 사본

4) 통관 및 검역 특이사항¹⁹⁾

□ 조제식료품의 자동수입허가(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 제도

- o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시행세칙⁸⁾에서 정하는 화장품, 특정 플라스틱 제품, 도자 · 유리 제품, 철강 제품, 기계 및 전자 제품, 차량, 가구류, 수산물, 각종 조제 식료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전, 물품의 하역 전에 자동수입허가(AIL)를 받아야 함
- o 본 시행세칙에서는 2010년 5월까지 시행됐던 산업무역부 시행세칙(Circular)No. 17/2008/TT-BCT의 대상 품목에 없었던 생선 등 날 음식(raw food)과 식용의 동물 내장, 각종 식용 제품, 음료와 의류, 신발류, 장난감 등 다양한 품목이 추가되었음. 수출용 일시 수입물품, 비상업적 물품, 면세점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은 AIL 적용이 배제됨. AIL의 신청은 품목별로 해야 하고,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수입 계약서, 상업송장, 대금 송금 관련 서류 및 선하증권 등 필요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해 이루어짐
- o 필요 서류로 상업 송장 및 선하 증권, 대금 결제 관련 서류 등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함
 - 자동수입허가 신청서 2부
 - 사업 등록 증명서(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허가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수입 계약서 및 이에 상응하는 서류 1부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1부
 - 신용장(L/C) 또는 대금 결제 관련 서류 또는 은행을 통한 송금 증명서 원본 1부
 - 선하 증권(Bill of Lading) 1부

19)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 우편은 하노이 소재 산업무역부의 본부 또는 호치민에 위치한 산업무역부의 사무소로 송부해야 함. 산업무역부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AIL이 발급되며, 발급된 AIL은 발급일로부터 30일 간 효력을 가짐. 불충분하거나 유효하지 아니한 서류의 제출 시 산업무역부는 신청서 상의 신청인 주소로 그 내용을 우편 통지함. 발급된 AIL이 분실 또는 훼손 시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필요 서류 및 사유서 제출을 통해 재발급 받거나 또는 수정이 가능

□ 수입 업체, 포장 식품 식품등록증 자체발급 가능

- (기존) 베트남에서 식품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 업체가 해당 상품을 검사하고, 베트남 정부에서 발급하는 식품등록증을 발급받아 왔음
- (변경) 정부의 새로운 시행령²⁰⁾에 따라 2018년 2월 2일부터 수입하는 포장 식품 대부분에 대하여 베트남 보건부의 식품등록증 발급 없이 수입 업체가 자체 발급하여 시장에 상품공급이 가능해짐
- (효과) 식품등록증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되며, 베트남 시장 내에서 유통되는 포장 식품의 70~75%에 대해 식품등록증 자체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 베트남 정부 시행령: No. 15/2018/ND-CP (2018년 2월 2일 발효)

5) FTA 정보²¹⁾

□ 베트남의 FTA 특이사항

-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AKFTA)와 한-베트남 FTA(VKFTA) 두가지가 체결되어 있어 물품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함
- 특정 품목은 한가지 FTA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품목에 따라 두가지 FTA가 양허하는 내용이 상이하므로, 양허대상품목 및 세율을 확인 한 후 유리한 협정을 적용해야 할 것

□ FTA 협정세율

- FTA협정세율은 MFN세율의 예외로서, FTA 체결국 간에는 양국 간 협상 결과에 따라 WTO 양허세율(MFN) 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우선적으로 상호 적용할 수 있음.
- 한-아세안 FTA에서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가 이루어지며, 협정문 상의 원산지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FTA 협정 세율을 적용 받아 수입 물품에 대해 무관세 또는 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한-ASEAN FTA

- 한-ASEAN FTA는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되어, FTA 발효에 따라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ASEAN 각 회원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양허 유형에 따라 협정 발효와 동시에 철폐되거나 또는 인하 스케줄에 따라 순차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 됨

□ 한-베트남 FTA

- 한-베트남 FTA는 2012년 9월 협상 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2월에 실질 타결되고, 2015년 5월 5일 하노이에서 정식 서명됐으며,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비준되었음.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한-베 FTA를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음
- 한-베트남 FTA는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고 무역 촉진적인 규범을 도입한 업그레이드형 FTA임. 기존 한-아세안 FTA의 낮은 개방도와 복잡한 원산지증명절차 문제로 인한 저조했던 FTA 활용률을 높이고자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양허 유형에 따라 관세가 순차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됨

21) 출처: TRADE NAVI 통합무역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tradenavi.or.kr>)

□ FTA 협정세율 적용 요건 및 방법

(1) FTA 원산지 기준²²⁾을 충족

1. 한-ASEAN FTA 원산지 기준

HS CODE(2012)	원산지 결정기준
1302.19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2. 한-베트남 FTA 원산지 기준

HS CODE(2012)	원산지 결정기준
1302.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직접운송 원칙의 충족

1. 개념

- FTA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원산지 결정 기준의 충족, 2)협정 당사자(국)간의 직접운송 원칙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인 경우에도 계약상대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계약상대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

2. 주의사항

-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된 경우, 직접운송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입증 책임은 특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에게 있으며, 제3국 경유가 지리적 또는 운송 상의 이유이며, 제3국에서 추가 가공이 없었음 등을 입증해야 함.
- 입증서류로는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원산지 증명서 원본, 그 밖에 경유국 세관당국에서 발행한 입증서류 등이 있음. 하지만 이러한 서류들은 사후 입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3국 경유 당시 입증 서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22) 교역제품의 국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실질적으로 상이한 제품으로 만들어 세번(稅番)이 변경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세번변경기준(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생산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해야 인정하는 부가가치기준(RVC : regional value contents), 특정한 생산공정이 수행돼야 인정하는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음.

(3) FTA 원산지 증명서

1. FTA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수입국에서 FTA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통관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으로 구분

구분	증명방식	증명 주체	증명서 유효기간	증명 서식	언어	사용횟수
FTA	기관증명	한-베 & 한-아세안 FTA 세관/상공회의소	1년	양국 간 통일증명 서식	영어	1회 사용원칙(분 할 가능)

2.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방법

- o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대한민국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 o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서류
 -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
 - 원산지소명서
- o 처리기간
 - a)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 ·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 b) 위 제1호 외의 경우: 3일(공휴일 ·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 o 신청방법
 -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함. 위의 필요서류를 구비한 후, 아래의 주소에 접하여 신청 가능
 - 세관 - 유니패스 (<http://www.unipass.co.kr/>)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cert.korcham.net/)

(4) FTA 협정세율 적용방법

- o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및 증빙서류를 베트남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협정세 적용이 가능
- o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 내용 참고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B/L(선하증권) 또는 AWB(항공화물운송장)
 - Packing list
 -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 (필요 시)해당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산지확인서 등)
- o FTA협정세율은 수입신고 시 적용받거나,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한-아세안 FTA), 1년 이내(한-베트남 FTA) 사후 적용도 가능함.

2. 인증정보

1) 개요

- 베트남은 5,000여 개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중 1,000여 개는 국제표준을 베트남 국내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베트남은 국제 표준협회의 회원국임에도 표준규격에 관한 제도가 복잡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은 국제 표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으며, 제품에 따라 항목 분류기준이 부재한 경우도 많음. 따라서, 제품별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표준 규격이나 제품 수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 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 받거나,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f Vietnam, 이하 STAMEQ)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용이함

□ QCVN (Product certification to Technical Regulation)²³⁾

- 베트남 STAMEQ에 의해 규정되는 QCVN(기술규제에 대한 제품인증)은 품질, 위생,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 규정 해당 품목에 따라 대부분 인증 유효기간은 3년, 사후관리가 됨
 - * 대상품목: 휘발유, 바이오 연료, 디젤유, 오토바이 헬멧, 노동자 보호장구, 장난감, 전기전자제품, PVC전선과 전기가전제품, 콘크리트 보강용 철강, Hot-rolled steel and pre-stress steel, LPG, EMC, 시멘트&클링커, 시멘트와 콘크리트, 비료와 살충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 포장재, 어패류 및 기타 식품류, 가축사료, 섬유와 의류제품
- 인정기구: BoA(Bureau of Accreditation)이며 인증기관은 QUAERT(Vietnam Certification Center)임
- 언어는 베트남 언어로 한정되며 인증규격은 각각 구입해야함
- 본 규정 해당 품목일 경우 자기적합성선언을 평가기관에서 점검 후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함. 이후 품질관리기관에서 재검토 및 등록 이후에 시장판매가 가능함
- 기술기준에 관해서는 베트남 법률(No: 68/2006/QH11: On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Appendix-1)에서 QCVN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과 TCVN (National Technical Standards) 두 종류가 규정되어있음
- 법률에서 명시되어있는 것은 아니나, QCVN은 기술기준의 최상위 규정으로서 그 외

23) 베트남 기술 규제에 대한 제품 인증(QCVN) 중 발체

의 관련 규정들이 준거해야 할 기본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농업농촌개발부 소관 검사대상품목²⁴⁾

○ 해양양식용 사료

- 생선분, 새우양식 혼합사료, 가재양식 혼합사료, 민물 생선용 혼합사료, 불락양식 혼합사료, 물고기양식 기타 사료

○ 해양양식 및 양식제품 (끓이거나 열을 가한 제품)

- 조개류, 냉장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동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 냉장 냉동 양식 수산물과 가공 제품, 기타 건식 수산물 제품

○ 가공 수산물제품 (즉시 먹을 수 있는 제품)

- 냉장 냉동 인스턴트 수산물 제품, 조개류, 양식 냉동 수산물 제품, 마른 인스턴트 수산물, 수산물 통조림, 참치 통조림

○ 식물 보호제

- 제초제, 쥐약, 번식 각성제, 살균제(곰팡이약), 살충제

○ 비료

- 요소비료, 복합비료(NPK), 질소고정 미생물비료, 섬유소(Cellulose)분해 미생물 비료, 인산용해 미생물 비료, 칼슘 마그네슘 인산비료, 과인산석회(SSP) 비료, 미생물유기비료, 사탕수수 찌꺼기 미생물 유기 비료, 고체폐기물 이용 미생물 유기비료, 기타 무기비료

○ 동물용 약품

- 동물용 의약품 및 원료

○ 동물사료

- 동물사료, 농후 사료

○ 품질검사 기관

- QUACERT, QUATEST 1, QUATEST 2, QUATEST 3, The Plant Protection Department

24) 베트남 기술 규제에 대한 제품 인증(QCVN) 중 발체 하였으며 알로에 액즙은 QCVN 인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건강기능식품 관련 인증²⁵⁾

- 제품 등록은 베트남 식약청(VDA)이 직접 관할함. 샘플 테스트 및 서류심사를 이행해야 하며 직접하거나 수입하는 에이전트가 대행을 해 줄 수도 있음

□ ISO 22000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²⁶⁾

ISO 22000		
인증/검사명	ISO 22000	
인증 설명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위해요소를 사전 예방 관리하는 자율적인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고객 만족을 위해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수립 및 운영할 수 있는 국제적인 인증	
발행/검사기관	한국품질보증원, AFAQ EAQA Korea	
성격	권장	
제출서류	- 심사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비용	신청비 60만 원 (심사비는 산정 기준에 따라 상이)	
소요기간	직원 수에 따라 인증 심사일수 상이	
유효기관	3년	
인증절차	1) 등록 신청서 작성 2) 인증 심사 1단계 - 경영시스템 매뉴얼이 ISO 22000에 준수하는지 확인 - 수행상태 및 인증범위 확인 - 시정조치 계획에 동의하는 보고서 발행 3) 인증 심사 2단계 - 생산방법, 관리, PRP 등 인증범위 내 프로세스 활동에 대한 샘플 심사 - 시스템 규격의 준수 정도 문서화 - HACCP 계획 및 절차서, 직원 능력 및 지식 테스트 4) 한글 및 영문 인증서 발행 5) 사후 심사관리 정기적으로 실시	

25)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26) 한국품질보증원 (www.kqa.co.kr), NQA(www.nqa.com), Biz Care(biz-care.kr)

□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인증/검사명	HACCP	
인증 설명	식품의 제조, 가공,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미생물 오염 등 위험을 방지하고 영업자에 의한 식품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함	
발행/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격	권장	
제출서류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영업자, 종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1부 -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 - 위생관리 프로그램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1부 -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1부	
비용	수수료 20만 원	
소요기간	1년 전후	
유효기관	3년	
인증절차	1) HACCP 시스템수립을 위한 생산, 기술, 설계, 연구 및 개발 등의 부서 대표자를 포함한 프로젝트팀 구성 2) 제품의 구성, 보관, 포장상태, 사용방법 등 나타내는 제품 기술서와 생산과정 흐름도를 작성 3) 생산공정의 각 단계와 도출된 유해요소를 파악하여 유해요소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결과의 심각성에 근거해 위험을 평가 4) 식품안전을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 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s) 선정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일반 관리 사항(POA)를 파악 5) 모든 위해요소의 관리가 기준치 설정대로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한계치 설정 6) 모니터링을 하며 서류기록을 한 뒤 지속적인 개선조치	

2) 제출서류

☐ 베트남 자동수입허가 신청서

licensing

....., dated.....

To: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Name of trader:.....
- Address:.....
- Tel.....Fax.....
- Registration of business No.....

Propose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to certify the import registration according to automatic import licensing as stipulated in the Industry and Trade Ministry's Circular No. 24/2010/TT-BCT of May 28, 2010, details of the goods consignment shall be as follows:

No.	Name of goods	HS code (10 digitals)	Exporting country	Quantity or volume	Value (USD)
1	...	...		...	..
2	...	...		...	...
...	...	...		...	...

Import contract No.:..... dated.....

Commercial invoice No.:.....dated.....

Bill of lading or transportation document No.:.....dated.....

Payment document No.:dated..... or L/C at sight No.:dated.....

Total quantity/volume:.....

Total value (USD):.....

(being converted into USD in case payment is made in other currencies)

Import border-gate:.....

(If being imported from non-tariff areas, please specify clearly)

Estimated time-limit for conducting import procedure:

(Specifying that estimated from the date.....to the date.....)

□ 베트남 수입신고서

(Issued in conjunction with the Industry and Trade Ministry's Circular No. 24/2010/TT-BCT of May 28, 2010 stipulating the application of automatic import licensing for a number of commodity items)

NAME OF TRADER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dependence – Freedom Happiness

....., dated.....

No.:

REPORT ON THE IMPORT

(For import goods whose import registration is certified in accordance with the time)

To: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Pursuant to the Industry and Trade Ministry's Circular No. 24/2010/TT-BCT of May 28, 2010 stipulating the application of automatic import licensing for a number of commodity items, the trader hereby report on the import, as follows:

Name of goods	HS code (10)	Registration number (granted by the	Customs declaration number	Quantity/volume	Value (USD)	Import quantity accumulated	Import value accumulated at the time of
---------------	--------------	-------------------------------------	----------------------------	-----------------	-------------	-----------------------------	---

	digital)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when certifying the import registration)				at the time of report	report (USD)

The trader undertakes that the above-mentioned declarations are truthful.

Representative-at-law of the Trader

(specifying position, signing and affixing seal)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첨부

원본(제2사본/제3사본)

1. 송하인(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			참조 번호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간 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병용) 서식 AK 발행국 _____ (국가) 뒷면 참조		
2. 수하인(수입자의 상호, 주소, 국가)					
3. 운송수단 및 경로 (아는 범위까지 기재) 출항일 선명/편명 적출항			4. 담당자란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 에 의한 특혜대우 ☐ 특혜대우 비부여 (사유 기재 요) 수입국의 권한있는 서명자의 서명		
5. 연번	6. 포장의 표시 및 번호	7.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적절한 경우 수량 기재 및 수입국의HS 번호 포함)	8. 원산지 기준 (뒷면 참조)	9.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및 가격(FOB)	10. 송장번호 및 일자
11. 수출자 신고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이며 모든 물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국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지대 특혜관세 의 원산지 요건에 부합하고 다음 국가로 수출되었음을 신고합니다. (수입국) 장소, 일자, 서명권자의 서명			12. 증명 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함. 장소, 날짜, 서명 및 증명기관의 확인		
13. ☐ 제 3 국 송장 ☐ 전 시 ☐ 연결 원산지 증명서					

뒷면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국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특별관세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다.

2. 조건 : AKFTA의 특별관세를 누리려면 상기 어느 당사국에 송부된 물품은 ,

- (i) 목적국의 양허받은 자격이 있는 품명과 일치해야 한다.
- (ii) AKFTA의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9조에 따른 운송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iii) AK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원산지 기준 : 원산지 기준 충족 물품에 대해서,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이 서식 제 8란에 해당 원산지 기준을 아래표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서식 제11란의 최초 국가내 생산 또는 제조환경	제8란에 기입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WO"
(나) AK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 제4.1항을 충족하는 물품	"CTH" or "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CTC"
- 세번변경 Tariff Classification	"WO-AK"
-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y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 예 - "RVC 45%"
- 역내부가가치 (RVC)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결합규정 : 예, "CTH + RVC 40%"
- 역내부가가치 + 세번변경	
- 특정 공정	- 특정 공정
(마)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	"제6조 "

- 4. 각 품목이 요건을 충족할 것 : 발송하는 모든 물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른 크기 품목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도 그러하다.
- 5. 품명 : 물품의 명세는 그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물품을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해야 한다. 제조자 이름, 상표도 특정되어야 한다.
- 6. 통일부호체계 번호 : 통일부호체계 번호는 수입국의 번호를 말한다.
- 7. 수출자 :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
- 8. 담당자 기재란 : 수입국의 관세당국은 특별관세의 부여 여부를 제4란의 해당 상자에 (√) 표시한다.
- 9. 제3국 송장 : 제3국에 의해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제3국 송장" 란에 (√) 로 표시한다. 그리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는 제7란에 기재한다.
- 10. 전시물품 : 원산지규정을 위한 증명 운영원칙 제20조에 따라, 제3국에서 전시를 위해 수출국의 영역으로부터 발송되어, 전시 중 또는 전시 후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을 위해 팔린 경우, "전시물품"란에 (√)로 표시된다.

□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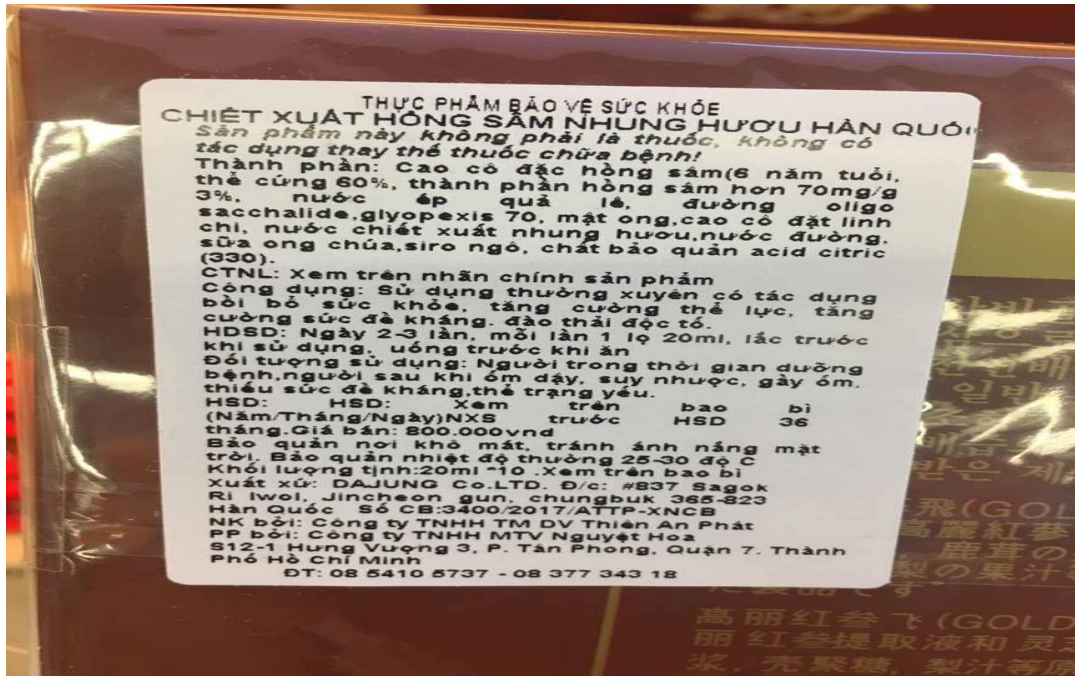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VIETNAM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V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Remarks					

3. 라벨링

라벨링 정보 개요

❖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라벨링 예시



자료: 현지조사원

❖ 베트남 식품 라벨링 의무 표기사항(시행령 43/2017/ND-CP)

번호	항목
1	제품명
2	제조자명(개인, 단체 명칭 및 주소)
3	원산지
4	중량
5	제조일 및 유통기한
6	구성성분
7	위생 및 안전 정보(경고)
8	사용 및 보관방법
9	표기 언어 및 방법

참고사항: 베트남 현지에 의약품목인 “알로에 액즙”이 없어 라벨 촬영은 상위 개념인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체함

□ 라벨링 관련 법률

- 베트남 정부의 수입·유통 제품에 대한 라벨링(Labeling) 규정 강화
 - 2017년 4월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한 신 라벨링 규정(Decree 43/2017/ND-CP²⁷⁾, 이하 Decree 43)을 공포한 바 있음.
 - 라벨은 제품 정보를 인쇄해 용기에 스티커, 사진 등의 형태로 부착돼 있으며 소비자가 제품을 식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지님.
 - 베트남 정부는 제조날짜, 원산지 등 주요 제품 정보가 빠진 허술한 라벨지를 모조품 성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음.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신 라벨링 규정(Decree 43)을 발표함.
 - 해당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2년간(2019년 6월 1일 이전)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함. 또한, 이전 라벨링 규정인 Decree 89/2006/ND-CP(이하 Decree 89)를 대체함.
- 라벨링은 베트남어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 표기를 붙일 수 있으나 베트남어 라벨보다 작아야 함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어가 아닌 라틴계열의 언어 사용허용
 -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베트남어로는 존재하지 않을 경우
 - 화학 공식과 화학적 구조공식이 수반된 경우
 - 제조 & 생산업체의 이름과 주소
- 라벨링은 다음과 같은 정보 포함 필수
 - 식품명
 - 식품에 대한 책임자명 및 연락처
 - 제품 수량 및 중량
 - 원재료명
 - 주요품질기준
 - 주요품질기준은 제품의 효과에 따라 안전성과 부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가치를 결정하는 지수를 포함
 - 영양소가 많은 제품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포함
 - 특정작용이 있는 제품은 해당 작용에 대한 성분을 열거

27) <https://vanbanphapluat.co/decree-43-2017-nd-cp-on-good-labels>

- 영양보충 식품은 보충물질명, 함유량, 적용대상, 복용량, 사용법을 표시
- 다이어트 제품의 경우 제품명 옆에 “다이어트” 라 표기하고 주요 작용을 식품명 옆에 표기
- 생산 일자, 보관기관, 사용 마감일
- 보관사용법
- 식품원산지

o 식품특성에 따른 의무표시내용

식품첨가물	음료(주류 이외의 것)	주류
용량,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성분함량, 사용방법, 보관방법	용량,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성분 및 성분함량, 안전 위생 경고문, 사용방법, 보관방법	용량, 에탄올함량, 보관방법(와인)
식품	식품류	
내용량, 제조날짜, 유통기한	용량,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성분 및 성분함량, 정보, 안전위생경고, 사용방법, 보관방법	

o 글자 크기 및 표시

- 글자 및 숫자 크기는 치수법(Law on Measurement)에 따라야 함. 만약 상품이 기 포장된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가공보조제에 해당한다면 라벨 글자 높이가 최소 1.2mm 이상이어야 함.

o 라벨표시 위반행위는 아래와 같음

- 규정된 라벨 없이 제품 유통
- 제품의 본질과 일치하지 않는 그림이나 글자 표기
- 라벨이 손상되거나 내용이 안 보일 정도로 흐릿함
- 규정된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음
- 크기, 위치, 기록방법, 언어를 맞춰 내용을 기록하지 않음
- 라벨에 기록한 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됨
- 사용자를 속이는 목적으로 라벨을 변경
- 소유자의 승인 없이 법률이 보호한 라벨 사용
- 법률이 보호한 타 상인의 라벨과 같은 라벨 사용

o 라벨링의 크기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제11조 항과 제12조 항에 따라 필요한 요구조건을 모두 갖추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o 유통기한: 건강식품, 식품보충제,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용 식품, 미량 영양보충 식품, 미생물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은 반드시 최상 품질 유지 기한이나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함

o 알로에 액즙 제품의 범주에 속하는 라벨링 필수 기재 사항

범주	필수 정보
건강보호식품	① 수량 ② 제조일 ③ 유효기간 ④ 성분, 성분의 양·영양가치(nutritional value) ⑤ 사용 방법, 보관 방법 ⑥ 위험 경고(있는 경우) ⑦ 라벨링: '건강보호식품(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⑧ 라벨링: '해당 상품은 약품이 아니며, 약품을 대체하지 않습니다(Thực phẩm này không phải là thuốc, không có tác dụng thay thế thuốc chữa bệnh)'

o 신 라벨링 규정(Decree 43)은 제품별 라벨링 조건 및 요구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관련 설명 및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 해당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2년(2019년 9월 1일 이전까지)의 유예 기간이 적용됨.

□ 라벨링 관련 법률 및 부처

o 관련 규정

- 법령 (Decree No.43/2017/ND-CP)

o 필수 정보(베트남어 표기 필수; 2019년 9월 1일 이전까지의 유효기간이 적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조식품- 중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성분, 성분별 중량 및 영양 가치- 사용 및 보관 안내- 위험에 관한 권고 사항 표시- “건강보조식품(Thực phẩm bảo vệ sức khỏe)” 문구 기재- “이 식품은 약이 아니며, 치료약을 대체하는 효능이 없습니다. (Thực phẩm này không phải là thuốc, không có tác dụng thay thế thuốc chữa bệnh.)” 문구 기재 |
|--|

o 라벨링과 관련해 관할권을 가진 기관은 다음과 같음

-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라벨링과 관련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관리
- 라벨링에 관한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 작성
- People's Committees (인민위원회)
- 지역사회에서 유통되는 상품들의 라벨링 검열

4. 위생규정

□ 식품첨가물 규정

- 베트남 보건부의 Decree No.3742/2001/QĐ-BYT 에서 알로에 액즙 에 해당되는 규정 없음

□ 중금속 규정

- 관련 규정: QCVN 8-2: 2011/BYT²⁸⁾

	최대 허용량 (mg/kg)					
	비소	카드뮴	납	수은	메탈 수은	아연
야채 및 과일주스(mg/l)	-	-	0,05 ²⁹⁾	-	-	-

□ 미생물 규정

- 관련 규정: QCVN 8-3:2012/BYT³⁰⁾
 - 의뢰 품목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식품 안전, 위생 및 품질검사 절차

- 베트남 식품관리청의 식품 안전, 위생 및 품질관리국은 식품의 안전, 위생 및 품질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음
- 수입식품이 반입된 지역의 검사 당국은 “식품 안전, 위생 및 품질 등록을 위한 검사 지침” 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 실시
- 식품위생, 안전 및 품질 요건 관리 규정에 기초하여, 베트남 정부는 위생, 안전 및 품질에 대한 강제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한 기간 적용되는 수입식품의 목록을 공표해야 함
- 베트남 정부와 외국 간의 상호인정 협정(MRA) 또는 국제기구의 감독하에서 허가 받은 조직/기관이 발행한 인증을 취득한 수입식품은 식품위생, 안전 및 품질 관련 법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가 아니며 검사 대상에서 제외

28) 자료: <http://www.nifc.gov.vn/attachments/article/229/qcvn8.2.pdf>

29) Includes NECTA, instant drink

30) 자료: <http://www.nifc.gov.vn/attachments/article/229/qcvn8.3.pdf>

□ 검사 인증서 발급 절차

- 국가품질관리 대상 수입식품 목록에 포함된 수입식품은 해당 기관에서 제시하는 식품의 안전, 위생 및 품질검사에서 적합 판정되었다는 인증 필요
- 위에서 언급한 목록에서 정하지 않는 수입식품은 식품위생, 안전 및 품질 관련법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만 검사
- 위생, 안전 및 품질 요건을 만족한 경우는 인증서가 세관에 통보되고 만족하지 못한 수입식품은 베트남 식품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처리, 폐기 또는 역수출 요구
- 베트남 식품관리청에서 재처리승인을 받아 재처리한 식품은 재검사하여 검사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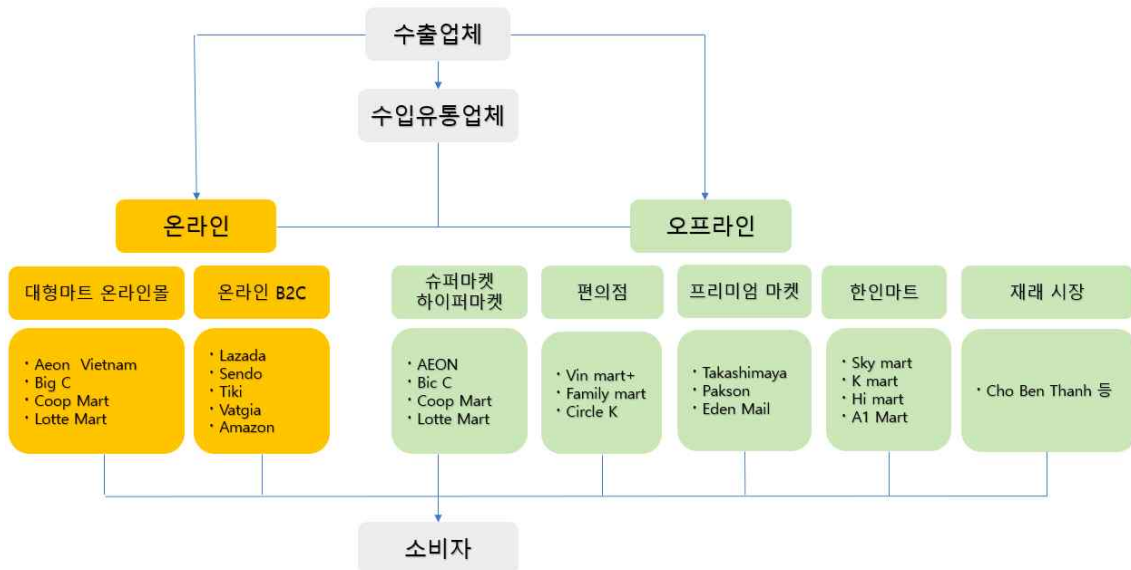


IV. 유통채널

1. 유통채널 개황

2. 주요 유통채널 분석

1. 유통채널 개황



온라인	오프라인
홈쇼핑	외국계 대형마트
SCJ  Lotte  Hyundai  Coop  GS 	Lottemart (한국)  E-mart (한국)  Aeon Mall (일본)  Big C (태국) 
	현지 대형마트
	Coopmart (베트남)  Maximark (베트남)  Citimart (베트남)  MM Mega Market (베트남) 
온라인 몰	편의점
Lazada  Sendo  Shopee  Tiki 	Circle (미국)  Ministop (일본)  Familymart (일본)  GS25 (한국)  Shop&Go (싱가폴)  Vinmart+(베트남)  Coop (베트남)  B's Mart (태국) 

1) 오프라인 유통채널

□ 주요 이용 채널은 재래시장임

- 베트남은 전통적인 소규모 소매점 위주의 식품 판매 형태를 나타냄
- 베트남 내 글로벌 기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베트남 소매유통시장은 가족이 운영하는 식료품점과 전통 유통망 비중이 높음
- 유로모니터의 2016년 Grocery Retailers in Vietnam 자료에 따르면 전통 유통점(재래 시장과 개인 소매점)이 판매의 94% 담당(현대적 유통점은 6%)

□ 현대적 유통망 급증

- 젊은 층의 구매력 향상과 빠른 도시화,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한 인식 확대로 소비자 패턴 급변
- 전문가들은 2025년까지 현대적 유통채널의 시장점유율이 20%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베트남의 대도시(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칸토 등)의 경우는 베트남 전체 수입 평균(약 250만 원/년)의 2~3배를 상회, 이들은 현대적 유통채널의 주요 타겟임

종류	진출 현황																				
하이퍼/ 슈퍼마켓	개요	- 중국 성장세 둔화에 따라 글로벌 체인점 베트남으로 진출 - 외국계 대형 유통기업 진입 규제 완화 - 지역소매점에서 대형마트로 원스톱 소비 문화																			
	현황	- 로컬 기업인 Coopmart는 전국 96개, 호치민 35개 매장을 보유 - 태국 기업인 Big C는 베트남 내 35개 매장 운영 - 주변국 슈퍼마켓 체인점뿐만 아니라 한국 롯데마트와 일본 대형 유통매장인 이온(Aeon) 진출 - 롯데마트 현재 13개 매장을 2020년까지 87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며 대형, 중형, 미니마트 등 다양한 크기로 진출 고려 - 한국 이마트는 호치민시 외곽에 약3ha(약 3만㎡) 크기의 매장을 오픈, 향후 10개 매장을 더 오픈할 전망 - 베트남 최대 휴대전화 소매업체 모바일월드는 3년 안에 375개 슈퍼마켓 매장을 열고 올해 말까지 이를 500곳으로 늘릴 예정																			
편의점	개요	- 2009년부터 베트남은 WTO 가입 2년 만에 소매업에 대한 외국 인지분 100% 소유 허용 - 2016년 500㎡ 이하 상점 개점에 대한 규제 장벽이 낮아지면서 해외 편의점 진출 가속화 - 베트남 편의점 시장은 2021년까지 연평균 15.7% 성장 전망³¹⁾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보다 높은 성장률 예상)																			
	현황	- 베트남 최대 부동산 기업 빈그룹 산하 편의점 브랜드 빈마트(Vinmart+) 2020년까지 4,000개 매장 오픈 네트워크 4배 확장 계획 - 한국 GS25를 2018 1월 호치민시에 1호 매장 오픈, 연말까지 50개 매장 오픈 계획, 10년 내 2,500개 확대 전망 - 7-eleven을 운영하는 일본 세븐&아이홀딩스는 2027년까지 베트남에 1000개 매장을 열겠다는 목표 [편의점별 매장 수³²⁾] <table><thead><tr><th>브랜드</th><th>매장 수 (대략적)</th></tr></thead><tbody><tr><td>Vinmart+(로컬)</td><td>1000</td></tr><tr><td>Circle (미국)</td><td>200</td></tr><tr><td>B's mart (태국)</td><td>150</td></tr><tr><td>Shop&Go (싱가폴)</td><td>120</td></tr><tr><td>Co.opFood (로컬)</td><td>100</td></tr><tr><td>Satrafood (로컬)</td><td>80</td></tr><tr><td>Ministop (일본)</td><td>50</td></tr><tr><td>Family Mart (일본)</td><td>40</td></tr><tr><td>7-Eleven (일본)</td><td>30</td></tr></tbody></table>	브랜드	매장 수 (대략적)	Vinmart+(로컬)	1000	Circle (미국)	200	B's mart (태국)	150	Shop&Go (싱가폴)	120	Co.opFood (로컬)	100	Satrafood (로컬)	80	Ministop (일본)	50	Family Mart (일본)	40	7-Eleven (일본)
브랜드	매장 수 (대략적)																				
Vinmart+(로컬)	1000																				
Circle (미국)	200																				
B's mart (태국)	150																				
Shop&Go (싱가폴)	120																				
Co.opFood (로컬)	100																				
Satrafood (로컬)	80																				
Ministop (일본)	50																				
Family Mart (일본)	40																				
7-Eleven (일본)	30																				

31) 자료: 시장조사업체 IGD리서치 비즈니스맨 신문 인용, 2018.04

32) 자료: 현지신문 Doanhhan 2018.04.10.

<http://doanhnhanplus.vn/kinh-doanh/chuyen-lam-an/cua-hang-tien-loi-dang-phu-khap-tp-hcm.html>

2) 온라인 유통채널³³⁾

□ 온라인몰 성장세

- 인터넷 보급률(53%) 스마트폰 보급률(55%) 확대로, 호치민, 하노이 등의 대도시 온라인 쇼핑몰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
- 유명 업체는 하단 표와 같음

그룹	쇼핑몰명	웹주소
Mingroup	Adayroi	www.adayroi.com
RecessCo	Lazada	www.lazada.vn
TIKI	Tiki	tiki.vn
Aeon	Aeon E Shop	aeoneshop.com

□ 온라인몰 판매/결제 방식

- 결제 또는 배송 시 후 현금 전달이나 신용/현금 카드 결제 중 선택이 가능하며, 카드 소지자가 적기 때문에 다수는 배송 후 현금 전달을 선호함
- 유명 온라인몰은 가격과 성분, 제품 이미지, 각종 행사 프로모션과 제품 상세 설명을 덧붙이며 마케팅
- 베트남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온라인 쇼핑몰 Lazada에 2015년 한국제품 전용 코너 마련

□ 동남아의 아마존 'LAZADA'

- 라자다 그룹 아래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라자다 베트남은 2012년 3월 베트남에 진출한 이래 전자상거래 분야의 선도 기업 역할을 하고 있음. 라자다는 베트남에 진출할 당시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인 인도네시아(lazada.co.id), 말레이시아(lazada.com.my), 태국(lazada.co.th), 필리핀(lazada.com.ph) 등지에서도 문을 열었으며 이후 2014년 6월 싱가포르에 본사(lazada.sg)를 설립
 - 라자다 그룹은 소싱허브 역할을 하는 홍콩지사와 함께 동남아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로 5억 명 이상의 고객 유치를 목표로 함
 - 라자다 베트남에 따르면 전체 고객의 70%가 호치민과 하노이에 분포해 있으며 여성 쇼핑객의 비중이 58%로 남성보다 많음. 전체 고객의 8-10%는 18~34세의 젊은 층으로 분석

33) 베트남 소매시장 잡아라. 해외업체들 경쟁 뜨거워, 이투데이, 2018.06.20.,

롯데마트, 내달 중국 매각작업 마무리...동남아 시장 집중, 데일리안, 2018.06.21.

강민호 롯데마트 베트남법인장 "2년 내 매장 87개 확보", 프라임경제, 2018.06.28

- 라자다의 판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라자다 베트남의 셀러센터 지침대로 판매자, 사업분야, 상점내용, 은행 계좌에 관한 자세한 정보 필요. 등록승인이 떨어지기까지는 7~10일 소요
- 상품 게시 비용 및 부가서비스 관리비는 추가되지 않으나 주문을 받고 물품을 팔았을 때 수수료 10% 지불
- 판매업자는 베트남 법에서 지정된 금지품목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소 5개의 재고수량을 준비해야 함.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24시간 안에 주문 상품을 포장하고 라자다의 외주 택배업체에 포장된 상품 발송. 판매업자는 배송 완료 후 14일 뒤 결제받을 수 있음

2. 주요 유통채널 분석

□ Coopmart

이미지	
컨택 포인트	Website : www.co-opmart.com.vn/ 주소 : 199-205 Nguyen Thai Hoc, Pham Ngu Lao Ward, Ho Chi Minh,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 +84-8-38-360-143
규모	1996년도에 첫 Co-op mart 오픈하여 지금까지 베트남 전역에 500개 가까이 매장이 있음. 그 중에 Co-op Extra (대형마트): 2개, 마트: 94개, Co-op food: 350개 (2018년 말까지), Sense city(백화점): 3개
특징	1989년 설립되어 호치민시에서 유통을 담당하였던 사이공트레이딩(Saigon Union Of Trading Cooperatives)에서 1996년 시작됨 전체적으로 한국마트나 일본마트에 비해 설비나 설계면에서 뒤떨어지나 현지인들에게 익숙함 가격이 저렴하고 일본, 유럽, 미국, 호주, 한국 등의 물품이 다양하게 판매됨 식품 안전문제로 직장인 뿐만 아니라 일반 주부들도 재래시장보다 더 애용함
입점 절차 관련 정보	o 직접 방문시 주소: Co-op mart 본사 호치민시 1군 Pham Ngu Lao동, Nguyen Thai Hoc거리 199-205번지1층 근무 시간: 오전 8시~ 11시 30분, 오후 1시30분 ~ 4시 30분까지 월요일: 식품 only 화요일: 화장품 only 수요일: Textile only

	목요일: 생활품 only - 필요서류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상품리스트 및 샘플 상품 관련서류 * 결과통보: 접수일로부터 14일(근무일 기준) o 우편으로 전달시 - 주소: Co-op mart 본사 호치민시 1군 Pham Ngu Lao동, Nguyen Thai Hoc거리 199-205번지 공급자관리실(Phòng giao dịch nhà cung cấp)
매 장 전 경	 

□ Lotte Mart

이미지	 
컨택포인트	Website :http://lottemart.com.vn/ 주소 : 469 Nguyen Huu Tho St., Tan Hung Ward, District 7, Ho Chi Minh City. Ho Chi Minh, Vietnam Tel: +84-28-3775-3232
규모	전국에 13개 매장, 각 지점별로 매장 설계 차이 있음
특징	롯데마트 본주소지인, 7군점은 매장진열과 설계가 고급스럽고 해산물, 공산품 등 상품이 고급스러우나, 기타 지역에 소재한 롯데마트는 Coopmart와 비슷하게 현지화 되어 있음 1층 야채, 육류, 가금류, 유제품, 해산물, 꽃 신선상품류, 2층 공산품 및 한국상품 전문 매장으로 나뉘어져 있음 외부전경은 한국의 백화점 1층처럼 입주사들의 상점들이 있고, 뒤쪽으로 마트가 구분되어 있음

□ Nhà thuốc Việt(베트남 약국)

이미지(일반 약국 예시)	
컨택 포인트	연락처: +84-98-388-3456

□ Guardian 약국

이미지	
컨택 포인트	Website : https://guardian.com.vn/vn/home https://www.facebook.com/guardianvn
	Tel: +84-28-3832-8272
규모	전국 70개 (호치민 62개)
특징	개인 건강 및 위생 제품을 판매 하며 일부 매장은 약국에 들어가 있음

[참고 문헌]

■ 참고 자료

1. 「Country Insight Snapshot Vietnam June 2018」, Dun & Bradstreet, 2018.6.15.
2. 「Vietnam Retail Foods (sector Report 2016)」, USDA, 2017.07.03.
3. 「Dietary Supplement in Vietnam-Analysis」,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8.10
4. 「The 2018 Global Retail Development Index」, A.T. Kearney, 2017.12.6.
5.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2018.02
6. 「Food and Agricultural Import Regulations and Standards Certification」, 미국 농무부 2017.12.28.
7.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환경산업무역포털, 2017.
8. 「Nationaltechnical regulation on the limits of heavy metals contamination in food」, QCVN 8-2:2011/BYT
9.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조세재정연구원, 2015.12
10. 「건강식품수출가이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6.20
11. 「갈수록 커지는 베트남 유통시장」, 한국경제, 2017.03.08
12. 「GS25,베트남 호찌민 매장 4곳 오픈... “글로벌 첫 매장”」, 한국경제, 2018.01.18.
13. 「Cửa hàng tiện lợi đang phủ khắp TP.HCM」, Doanh Nhan, 2018.10.04.
14. 「Decree43/2017/ND-CP」 USDA Report 2017.08.11.
15. 「열려라베트남! 식품등록증 발급제도 폐지로 베트남 수출 쉽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8.04.23.
16. 2017 베트남 소매유통채널현황 (aT) 보고서
17. Nghị định 69/2018/NĐ-CP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Quản lý ngoại thương (No. 69/2018 / ND-CP (대외 무역 관리법))

■ 참고 사이트

1. Nhân sâm (congtynhansam.org/tu-van/tu-van-ve-nhan-sam/)
2. 관세법령정보포털 3.0(unipass.customs.go.kr)
3. 세계 HS 정보시스템(www.customs.go.kr)
4. International Trade Centre(www.trademap.org)
5. 유엔식량농업기구(www.fao.org)
6. 러시아 연방 보건 위생국(www.rosпотреbnadzor.ru)
7. 베트남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vn/home.aspx?language=en-US)
8. 베트남 식품청(www.vfa.gov.vn/)
9. 베트남 보건부(www.moit.gov.vn/)
10. 연합뉴스(www.moit.gov.vn/)
11. 베한 타임즈(www.viethantimes.com/)
12. 유로 모니터(www.portal.euromonitor.com)
13. 닐슨(www.nielsen.com)
14. 스페셜푸드베트남(specialfoodvietnam.com)
15. 보건위생부(www.moh.gov.vn)
16. 농업농촌개발부(www.omard.gov.vn)

17. 식품안전위생검역원(www.vfa.gov.vn)
18. 수의검역원(www.cucthuy.gov.vn)
19.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www.kipf.re.kr)

2018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

No . 1808-04

품 목 : 알로에 액즙 (Aloe Sap)

국 가 : 베트남(Vietnam)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 행 일 2018

발 행 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정보부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02-6300-1119 <http://www.kati.net>

자료문의 aT수출정보부
02-6300-1119

o 본 자료는 원본으로 본문 전체는 한국농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www.kati.net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o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o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제,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